

03

〈나는 신이다〉가 던진 저널리즘 법제의 새로운 과제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1. <나는 신이다>의 파장: 언론분쟁 의 가능성

방송사와 언론인들이 글로벌 OTT(Over The Top)¹⁾ 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ix)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으로 지난 3월 3일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라 한다)이라는 8부작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4개의 사이비 종교단체의 만행과 피해를 다루고 있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해 3부, 오대양 사건에 대해 1부, 아가동산 사건 2부,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사건 2부 등 총 8부로 구성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스탠딩 코메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받게 된 것은 실제 제작을 맡은 곳이 문화방송(MBC)이었다는 점인데, 문화방송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인 <PD수첩>을 연출한 조성현 감독이 담당했다.

문화방송은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이 다큐멘터리 이후 직접 후속보도를 내보기도 했다. 지난 4월 19일 MBC <PD수첩>에서는 현재 구속수감 중인 JMS 총재 정명석 씨에 관한 후속편을 공개하였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와 지상파 방송보도를 차례로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전략으로 보였다. 넷플릭스로 공중의 주목을 이끈 이후 자연스럽게 방송으로 유도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사이비 종교 내지 종교인들의 비리에 관한 보도로 인해 신도들의 시위 및 각종 소송문제로 힘들었던 문화방송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넷플릭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본래 이 다큐멘터리는 문화방송에서 방송될 계획이었지만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이비 종교 내지 종교단체로부터 보도 내용에 대한 공격과 법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한 것이었다.²⁾ 이렇게 넷플릭스가 100% 투자하여 문화방송과 넷플릭스의 협업이 탄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전에도 사이비 종교에 관하여 여러 번 방송되었지만, 최근에 다시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공(功)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외

1) 초고속 인터넷망과 PC를 비롯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Over the Top)는 전기통신의 형식을 갖춘 채, 점점 방송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2) 조성현 PD도 한 인터뷰에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인터뷰 내용에 관해서는 MBC 라디오 (2023. 3. 7). <김중배의 시선집중> "JMS 폭로 <나는 신이다> 제작, 그 뒷 이야기" 참조. URL: https://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196868&list_use=1&bbs_id=focus03&page=1 를 참조.

국민 신도 2명에 대한 성폭력으로 구속기소되어 다시 재판 중인 정명석 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정명석 재판’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사이버 종교문제는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다.³⁾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 이전에 보였던 기존 언론사들의 상대적인 무관심에 비하면, 공개 이후 사이버 종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문제의식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탐사보도가 목적인 저널리즘의 역할이 OTT를 통하여 더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작진이 예상하였겠지만, 방송 직전과 직후 JMS와 아가동산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과거에 여성신도 강간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2018년까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정명석 씨는 다시 여성신도 강간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상태였다. JMS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 이전인 2월 24일 넷플릭스와 제작사인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3월 2일 “다큐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방송 직후인 3월 13일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5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코리아와 넷플릭스 미국 본사 그리고 제작사인 MBC와 연출을 담당한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법원은 “제작사인 MBC와 조성현 PD에게 방송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또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⁵⁾ 이후 아가동산측은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⁶⁾

〈나는 신이다〉의 제작의도가 사이버 종교의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3) 오승복 (2023. 3. 6). KBS 보도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받게 해야”. 〈KBS뉴스〉. URL: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9378>

4) 박규리 (2023. 3. 2).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JMS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2138300004>

5) 이남경 (2023. 5. 24). 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MBN뉴스〉. URL: <https://www.mbn.co.kr/news/entertain/4932088>

6) 김철희 (2023. 5. 25).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로도 상영금지 가처분 재신청. 〈YTN〉.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89179?sid=102>



일깨우는 것이었다면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출과 편집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재연’한 방식이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다는 비판이었다. <나는 신이다>는 피해자의 증언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성폭력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모사(摹寫)하였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모사된 사건들은 실제 사실이었으며, 심지어 실제 수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라고 하였다.⁷⁾ 만약 이 다큐멘터리가 문화방송에서 공개되었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나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이러한 기준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언론의 보도방식과 차이가 있는 OTT의 탐사보도 다큐멘터리의 보도방식은 향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 OTT 다큐멘터리가 탐사보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언론이 가져야 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윤리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OTT는 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단도

7) 앞의 조성현PD 인터뷰 참조.

될 수 있다. <나는 신이다>의 제작진 역시 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외 OTT와 협업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다큐멘터리 연출은 넷플릭스라는 상업적 매체, 즉 유료 회원제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지상파에 대한 방송법상 규제와 방송사 내부절차와는 달리, 넷플릭스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공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활발하게 성장하는 OTT 사업 추세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 등 언론분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향후 OTT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대상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선정적인 연예프로그램이나 폭력, 마약 등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향후 보다 큰 법적인 쟁점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체계에서 OTT는 전기통신법상의 부가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방송법」상 '방송'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상 '언론'도 아니기 때문이다. OTT를 방송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지만, OTT가 방송이라는 시각 자체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요컨대 언론인 출신 제작진과 달리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 다큐멘터리가 언론보도인지의 여부에서부터, 유료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에 어떤 내용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방식은 행정청에 의한 직접 규제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규제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등등 우리 언론과 방송법제에서 해외 글로벌 OTT를 포함한 OTT에 관한 법적인 이슈들이 <나는 신이다>를 계기로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2. OTT 저널리즘에 대한 법제 적용의 가능성 및 한계

넷플릭스의 등장과 부각은 우리 동영상 제작 및 유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 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 등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갖고 있는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은 온라인 세계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OTT 사업자는 사적 검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고리즘의 선호를 이용하여 시청자들에게 특정한 작품의 선호를 조종할 수 있다. 소비자와 동영상 작품을 연

걸시켜주는 플랫폼 내지 포털사업자는 문지기(gatekeeper)가 되어 소비자가 눈치챌 수 없도록 은밀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호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해 모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동영상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글로벌 OTT의 자본력은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우(杞憂)겠지만, 지상파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이 넷플릭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98년 DVD 대여점 사업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불과 16년 전인 2007년부터 가입자들에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때만 해도 넷플릭스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다큐멘터리 각종 분야에서 전세계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글로벌 OTT는 향후 시사대담 내지 뉴스서비스에 이르는 콘텐츠에까지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으며, 실제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뉴스룸을 제공하는 방송사 OTT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뉴스방송이나 다시보기 또는 뉴스연장 방송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OTT와 뉴스는 이제 그 경계를 서로 넘나들고 있다.

다만 우리 법제에서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서비스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⁸⁾ 현재의 방송환경을 규정하는 법제도는 2000년에 제정된 일명 '통합 「방송법」 체계'이다. 즉, 구(舊)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그리고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합한 것이 현재의 「방송법」인데, 통합법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시장에서 새로운 매체 내지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인터넷 방송서비스가 등장하자 입법자는 방송법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즉, 매체별 규제라는 이른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매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입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내용규제라 할 수 있다.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8) 전기통신사업법은 OTT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영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2의 2).



다는 점에서 방송과 똑같지만,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방송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OTT에 방송과 같은 규제를 실시한다면, 실제 적용되는 규범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 규정은 방송의 공적 책임(제7조), 공정성(제9조~제13조), 객관성(제14조~제18조), 윤리적 수준(제25조~제34조), 소재 및 표현기법(제35조~제42조의2), 어린이·청소년 보호(제43조~제45조의2), 광고효과 등(제46조~제50조), 방송언어(제51조~제52조)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OTT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방송기준과 이 기준을 비교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 등과 같은 방송심의에 고유한 항목들이 인터넷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어 적용된다.⁹⁾

OTT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에서 방송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국내 OTT는 드라마와 영화를, 넷플릭스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는 여기에 더해 시사보도를 표방한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OTT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이제 방송과 매우 유사하며, 사실상 방송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를 방송으로

9) 황성기 (2017). OTT 서비스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내용적 규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4집 제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p.2.

분류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기능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체계에
서 OTT는 아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로 인해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나 조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OTT는 통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현행
방송법체계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OTT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
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 절차만 이행하면 누구나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
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
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제22조의5 제1항, 제22조의5 제2항 및 제22조의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의무(제22조의7), 국내 대리인(제22조의8), 실태조사(34조의2 제1항)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도 금지된다(제50조 제1항 제5호, 제52조, 제53조).

또한 OTT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
고 있으며, 불법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이에 대한 삭제 조치 의무가 부여되
어 있다. OTT 콘텐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유해 정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료로 유통되는
VOD 콘텐츠의 경우 사전 등급 심의의 대상이 된다.

지난 20여 년간 방송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지상파, 케이블, 위
성과 같은 유·무선 방송사업자들이 경쟁하던 환경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OTT사업자들, 즉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
이 시장을 주도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OTT가 방
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미디
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 등장한 OTT 미디어들은 이제 언론의 역할
을 넘나들고 있다. 즉 기존의 방송은 이제 OTT영역까지 넘어서야 하는 과
제를 안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해 OTT에까지 방송의 역무를 확장할 것인지
가 OTT 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OTT에 대하여 방송과 같
은 내용규제와 제재조치를 신설할 것인지를, 그리고 작게 보면 공영 OTT
를 만들고, 공영 OTT에서도 의무전송과 의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OTT에 적합한 방송법적 규제는 많지 않으며,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TT는 현재 방송법상의 방송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라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OTT를 포함한 모든 시청각서비스를 통합하는 법을 제정하여 방송법에 편입시키려는 입법정책과 통합방송법안들이 시도되었지만,¹⁰⁾ 근본적으로 방송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는 신이다>의 사례에서 보듯, 콘텐츠 종류와 수준에 따라 OTT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의 자유 및 보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역할과 특성이 서로 다른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현행 규제 제도를 넓혀가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또한 OTT의 규제 강화는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효과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라는 수평적 규제를 논의하지만, OTT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터넷으로 방송이 전파되는 주파수의 희소성이 사라진 시대에 공공성을 강조한 공영 방송규제를 기본적 규제로 삼을 이유가 있을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그리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반드시 법적 강제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저널리즘 직업윤리와 자율규제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저널리즘이 법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인지에 관한 고민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행정규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와 별도로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국내외 OTT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례는 실제 일어났으며, 앞으로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3. OTT의 인격권 침해, 피해구제 위한 법적 개념 정립부터

OTT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에는 일반 사법제도가 적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OTT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OTT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형법」상의 모욕죄, 「민법」상의 손해배상 등의 제도들 모두 글로벌 기업에 적용

10) 대표적인 예로 2019년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 개정안을 들 수 있다.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나는 신이다> 사례에서도 보듯, 해외 본사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는 쉽지 않고, 넷플릭스 코리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이와 비슷한 현실을 보여준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모욕 및 헐담을 한 글이 트위터(twitter)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글이 구글(www.google.co.kr)에서 검색된다는 점에서 트위터코리아 유한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였다.¹¹⁾ 그러나 법원은 트위터코리아는 '트위터 웹사이트, 모바일 네트워크 및 기타 플랫폼 등에서의 트위터 정보 네트워크의 프로모션을 위한 마케팅, 광고, 판매지원, 전략, 기타 서비스 관련 지원 및 자문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및 잠재적인 광고주 커뮤니티 개발 및 유지 관련 지원, 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회사라는 점에서 해당 글에 대한 삭제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즉, 해당 글에 대한 삭제 권한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Twitter International Company에 있다고 본 것이다.¹²⁾ 그런데 이러한 판결의 결과는 사실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해외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권리 구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구글이나 페이스북(Facebook)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OTT를 포함한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에서 국내 이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³⁾ 「전기통신사업법」은 2020년 법개정을 통해 제22조의8을 신설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될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OTT나 유튜브 등에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OTT를 방송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OTT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방송에 준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모로 모색될 수 있다. 헌법과 방송법 그리고 언론중재법의 방송 개념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언론중재법상의 방송 개념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가합670 손해배상(기)

12) 위 판례의 본안판단 부분 참조.

13) 박아란 (2020),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3호, p.34.

실제 헌법상의 방송과 방송법상의 방송은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¹⁴⁾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방송 개념 또한 그 목적과 기능을 위하여 또 다른 범위와 수준에서 개념형성이 될 수 있다. 주파수의 희소성이 사라진 시대에 헌법상의 방송 개념이 공적인 의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해당한다면 OTT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의 방송개념은 방송의 자유권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¹⁵⁾ 이에 반해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은 헌법상의 가치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또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입법목적과 기능에서 방송의 개념과 규제를 형성할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OTT는 사업진입과 편성권 등에서 기존의 방송과 결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OTT는 기능에 있어서 방송과 유사한데, 그러한 이유에서 OTT를 방송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규제의 범위를 방송과 같이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려는 언론의 자유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 및 방송 개념도 이 법의 목적인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념범위를 다르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OTT가 방송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절차와 방법을 방송과 유사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나가며

기본적으로 <나는 신이다> 연출방식의 선정성 문제는 피해자들 즉, 인터뷰 참가자들로부터 제기되지 않아 OTT와 피해자 간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다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언론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출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으로서의 <나는 신이다>는 탐사보도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14) 권형돈 (2019).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언론과 법>, 제18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p.16.

15) 권형돈 (2019). 위의 논문, p.17.



OTT 기능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OTT의 기능은 기존 미디어와 언론법제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른바 대안 언론임을 내세운 수많은 1인 매체들이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언론사와 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저널리즘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정의하기 쉽지 않다. 좋은 저널리즘을 논할 때에는 시민, 공공, 책임 등의 관점에서 언론 및 언론법제의 역할과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언론은 시민들, 즉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공공의 관심을 받아야 할 사실들을 밝혀내고, 독자들에게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그리고 객관성을 갖고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좋은 저널리즘의 기본적 가치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이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도 최소한일지라도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능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가 있다면 언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제도는 항상 현상보다 느리게 따라가게 마련이다. 민법, 형법 등 타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언론법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표현물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타리를 이용한 언론인들의 새로운 시도는 탐사 보도나 심층적인 보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상업적인 매체의 특성이 언론보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는 다양한 매체들을 어떻게 기존 언론제도와 연결시킬지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분쟁의 경우에도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에서 이뤄지는 저널리즘 콘텐츠를 언론중재법상 언론조정·중재 대상으로 규정할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국내의 OTT 자체가 내부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국내 내지 글로벌 기업들에게 규정 마련을 유도하고 그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언론인 스스로도 어떤 매체에서 활동하더라도 스스로 저널리즘을 준수하도록 다짐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규범은 법이지만,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법의 강제가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

한 규범은 직업윤리이며, 가장 대표적인 직업윤리는 저널리즘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여론형성에 공익적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자율적으로 직업윤리로써의 저널리즘을 강조해왔다. 우리 언론법제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저널리즘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